

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보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8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

양은숙 의원, 박영동 의원

1. 제안이유

출향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,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대해 정산 및 환수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향인의 지위 구체화 (안 제2조~제3조)

나. 향우회의 구성과 운영 삭제 (안 제5조)

다. 비용의 환수절차 신설(안 제8조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향우회”란 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, 군 이외의 읍·면 이상의 지역단위에서 출향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정하고 있지 않는 한”을 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”으로, “군의 재산”을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 따른 군의 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비용의 정산 및 환수) ①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해당 사업 등의 종료 후 사업 등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거나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,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향우회”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군 이외의 읍·면 이상의 지역단위로 결성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출향인의 지위)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달성군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<u>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</u>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향우회의 구성과 운영) 향우회는 출향인이 출신지역별, 출신학교별, 직능별 등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비용의 정산)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그 사업(행사·활동)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사업(행사·활동)보고서와 비용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향우회”란 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, <u>군 이외의 읍·면 이상의 지역단위에서 출향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출향인의 지위) ----- -----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----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 따른 <u>군의 공유재산</u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 제〉</p> <p>제8조(비용의 정산 및 환수) ①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해당 사업 등의 종료 후 사업 등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</p>

지출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
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.

하며, 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
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
되었거나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
청 또는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
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
일부를 지원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하
여야 한다.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
원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,
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「지방행정제
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에 따른다.